

영등포구의회
제143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·운영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3. 2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·운영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최미경 의원 외 5인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·운영 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9. 2. 20
- 제 안 자 : 최미경 의원(외 5인)

■ 제정(제안) 이유

- 일반인에 비해 문화생활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영등포구에서 관리·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영등포구가 관리·운영하는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(안 제2조)
- 관람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지정·설치하도록 하고,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의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함(안 제4조)
-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,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영등포구가 출자·출연한 법인이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시설을 개선할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■ 관련법규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·제4조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 제4조
- 「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」 제2조

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송파구, 강동구, 중구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공연장 등에는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고 관람 및 이동하기 좋은 장소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- 안 제2조에 영등포구가 관리·운영하는 공연시설과 지역문화 복지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며,
- 안 제4조에는 관람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지정·설치하도록 하고,
- 안 제5조 및 제6조에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,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는 영등포구가 출자·출연한 법인이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대로 시설을 개선할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, 장애인들이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상인 등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서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3. 2

보 고 자 : 이 남 식

참고자료 : 관련 법령

관 련 법 규

□ 장애인복지법

제2조 (장애인의 정의 등) ①"장애인"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"신체적 장애"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
2. "정신적 장애"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제4조 (장애인의 권리)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,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.

②장애인은 국가·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,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.

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

제4조 (접근권)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

제2조 (문화시설의 종류) 「문화예술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
[별표 1]

문화시설의 종류(제2조 관련)

1. 공연시설

가. 공연장: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(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)

- 1) 종합공연장: 시·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
- 2) 일반공연장: 시·군·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
- 3) 소공연장: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

나. 영화상영관: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

- 1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
- 2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 상영장

다. 야외음악당 등: 연주·연극·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

2. 전시시설

가. 박물관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

나. 미술관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

다. 화랑: 회화·서예·사진·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·매매하는 시설

라. 조각공원: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

3. 도서시설

가. 도서관: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

나. 문고: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

4. 지역문화복지시설

가. 문화의 집: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

나. 복지회관: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,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

다. 문화체육센터: 지역주민의 문화·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

라. 청소년활동시설: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

5. 문화 보급·전수시설

가. 지방문화원: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

나. 국악원: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

다. 전수회관: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·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

6. 그 밖의 문화시설

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